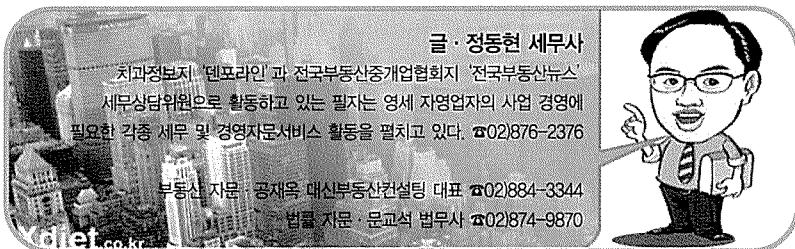


## 제과인들의 권리 찾기 ③

제과점을 창업하고 경영하다보면 이것저것 신경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법과 세무에 관련한 난관 앞에서는 막막해지게 마련.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리 멀리 않은 곳에 해법이 있다.

권리 앞에 당당한 제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생활 속의 법률 상식 노트를 펼쳐보자.



## 알아두면 요긴한 창업 세무상식 I

IMF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태풍으로 조기퇴직자 및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과점을 포함한 음식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업 및 경영시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해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달에는 창업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와 기본적인 세무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사업자등록 신청

제과점 창업시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①업종선택 ②자금조달 ③입지선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이 끝나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듯 점포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First, 인허가 승인

개인 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 없이 점포가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과업은 인·허가 대상 사업에 속하므로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해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각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 관할 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Second,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를 임차한 경우
- 음식점영업허기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 ☞ 사업자유형 선택시 유의사항

해당 점포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앞으로 어디에 분류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창업시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만 창업 시설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1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2.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 1) 소득세

####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에서 제품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연간 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다음 사항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 ① 기준경비율제도

- 적용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9천만원(2003년기준) 이상인 사업자

$$\text{소득금액} = \text{연간 총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text{매입비}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연간총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6.3\%)$$

-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 적용대상자 :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소득을 기록하지 않은 자

$$\text{소득금액} = \text{연간 총수입금액} - \text{연간총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82.9\%)$$

-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소득)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18%	900,000
4,000만원 초과	27%	4,500,000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

예)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frac{5,000\text{만원}}{4,000\text{만원 초과}} \times 27\% - 4,500,000\text{원} = 9,000,000\text{원입니다.}$

####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사업자가 매년 1.1~12.31까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한달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전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이상) 및 간편장부대상자(전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미만)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 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02년부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빼짐없이 수취·보관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부가가치세

####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물건을 팔 때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 고객에게 받은 세금에서 해당 물건을 구비할 때 지불한 세금(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부담한 세금을 업주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분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공급가액} \times 10\%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실적	7.1~7.25	7.1~12.31 실적	다음해 1.1~1.25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기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간이과세자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액} \times \text{업종별부가가치율} \times 10\% - \text{매입세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 음식점업(제과점 포함) 부가가치율 : 35%(2003년), 40%(2004년이후)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요령은 일반과세자와 대부분 동일하며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3/103)을 세액공제 합니다.

#### - 납부 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기타 세무 관련 문의사항은 정동현세무사사무실 ☎ 02)876-2376이나 홈페이지 [www.taxdiet.co.kr](http://www.taxdiet.co.kr)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